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지원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 주택공사등이 시행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u> <u>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 립 비용</u> <u>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u> <u>3.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u> <u>4. 제9조에 따른 빈 집정비사업 비용</u>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국가는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 주택공사등이 제9 조에 따라 시행하 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u>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8
----------	------

발의연월일 : 2024. 11. 14.

발 의 자 : 황운하 · 김재원 · 이해민
김용민 · 조 국 · 김준형
강경숙 · 신장식 · 김선민
이재관 · 서왕진 · 윤종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국가의 비용 지원범위를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로 수정함(안 제44조제4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u> <u>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u> <u>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u> <u>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